

■ 법률 칼럼

취업이민 절차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경로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입니다. 오늘은 취업이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민의 큰 특징은 다른 이민 절차와 달리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이 이민 절차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청 과정과 이민국의 이민 과정으로 나뉘어집니다.

1. 노동청 과정의 내용

1) 적정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노동청이 학력, 경력,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영주권 신청을 발미로 스폰서회사가 너무 낮은 임금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Offer)하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이민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 광고 단계: 적정임금결정 이후에 광고를 통해서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광고 게재 후에 들어오는 이력서들을 스폰서 회사는 리뷰하여 적절한 지원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노동 인증 단계 (Labor Certification): 적절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 광고가 나간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펴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인증 즉 적정임금, 광고 단계 등을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인증해 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펴를 통한 인증 기간이 감사(Audit)이 없는 경우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이민국 과정

1) I-140 (고용주의 이민청원서): 펴를 통한 노동인증(L/C)이 승인되면 우선 스폰서 고용주 회사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심사 기준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입니다. 즉 노동청 과정에서 결정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회사에 있음을 법인세 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생 회사로 적절한 세금 보고가 없는 경우는 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재정 보고서, 은행잔고 증명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서 재정능력을 승인해 줄지 말

지는 이민심사관에게 달려 있고 최근 경향은 IRS에 제출된 공신력이 있는 서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I-485 단계: 이 단계는 영주권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심사 대상은 신청인 자신에 대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신청인이 자격 요건 즉 적정임금을 신청한 직종에 맞는 학력, 경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 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신 분들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 즉 W-2 세금보고서, paystub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학생으로 체류하신 분들은 학교를 다닌 증거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과목 관련 과제/시험, I-20 등을 준비하시고 또 E-2체류자 분들은 사업을 계속하셨다는 증거 즉 세금보고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보여주는 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주의가 요청되는 사항

1) 아직까지는 규정상 취업이민이 전수인터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부분 인터뷰없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바로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니 최근 간간히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영주권 승인 후 실사 - 영주권 승인 이후에 제대로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인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용주/신청인 모두 신청인의 직종, 업무 내용 등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지급된 기록도 잘 보관해두고 계셔야 실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고 급여 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결정된 적정 임금만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실패와 대책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높은 성공율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100%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 1년 내가 약 95% 정도입니다. 일단 이 기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주위 뼈의 성숙도가 기존 뼈의 성숙도와 유사할 정도로 치유되어 저작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높아져 아주 낮은 실패율을 보입니다. 약 30년동안 5%의 실패를 보인다고 하니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률을 얘기할 때는 뼈에 식립된 임플란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임플란트 지주체나 크라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재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성공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비숙련된 임플란트 식립 시술, 치유 초기 단계에서의 과도한 저작 압력, 그리고 부적절한 치태 관리 능력으로 인한 감염 등이 원인 인자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실패라고 하면 뼈의 파괴를 동반합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긴밀하게 자라들어와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잡는 현미경 소견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건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는 뼈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 파괴된 공간으로 연조직이 자라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뼈가 임플란트를 단단히 잡아



주어야 하는데 잇몸 조직이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자라들어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양상은 감염보다는 유해한 과부하가 임플란트를 통해 초기 치유되고 있는 뼈에 가해질 때나 숙려되지 못한 시술로 임플란트가 식립 뼈에 삽입 구멍을 낼 때 드릴에 의해 과도한 마찰열이 가해지거나 식립 구멍 부적절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할 경우 뼈의 파괴 양상이 임플란트 표면을 중심으로 약 1 - 2 mm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 뼈의 양이 충분한 경우라면 실패가 일어난 부위의 주변이 뼈로 둘러싸이는 환경이 대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더 큰 임플란트를 심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뼈이식 후 약 3-4개월 후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뿐 사실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1447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허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3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